

# 環境影響評價制度의 技術指針

李 金 洙

〈韓國綜合技術開發公社 理事〉

이 글은 東京都 環境保全局 環境관리부에서 발행한「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술지침 참고서」에서 實施手法를 발췌, 번역한 것이다.  
평가제도는 한정된 환경자원을 우리세대가 살면서 이를 최대한 保全하여, 다음세대에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대 사명에 입각한 우리의 과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본 글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종사하는 관계담당자와 환경영향평가업무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여겨진다.

□ 譯者 註

## 環境影響評價의 實施手法

이 技術指針에 입각한 環境影響評價는 다음 手法으로 한다.

### 1. 地域概況의 把握

豫測·評價項目을 選定하기 위하여는 對象事業을 實施하려는 地域 및 其他 周邊地域의 概況을 別表에 明示하는 地域概況調査事項에 依하여 把握한다.

이 地域의 概況 調査는 既存資料의 整理·解析 및 必要에 따라 現地調査한다.

### 2. 環境에 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는 行爲, 要因의 抽出

事業種類, 規模, 其他 事業計劃案의 內容을 檢討하고 事業實施에 따라 行하여지는 環境에 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는 行爲 및 其他 行爲로 發生하는 要因을 工事의 施行中 工事完了後의 단계에 對하여 抽出한다.

### 3. 豫測評價項目의 選定

前項에서 抽出한 行爲要因은 다음에 열거하는 豫測·評價項目과의 관련을 정리하고 1의 項에서 把握한 地域概況을 充分히 감안하여 必要한 豫測·評價項目을 選定한다.

이때 選定하지 않은 豫測·評價項目에 對하여

는 그 理由를 明記한다. 大氣汚染, 水質汚染, 土壤汚染, 騒音, 振動, 低周波空氣振動, 地盤沈下, 惡臭, 日照障害, 電波障害, 風害, 植物, 地形, 地質, 史跡, 文化財景觀 또한 行爲, 要因別로 豫測·評價項目을 정리하고 選定時에는 別記書式을 參考로 하여 그의 關連을 明示하는 表를 作成한다.

### 4. 現況調査, 豫測 및 評價의 實施

前項에서 選定한 工事施行中 또는 工事完了後의 關係된 豫測·評價項目에 對하여 第2章에서 定하는 바에 依하여 現況調査, 豫測·評價를 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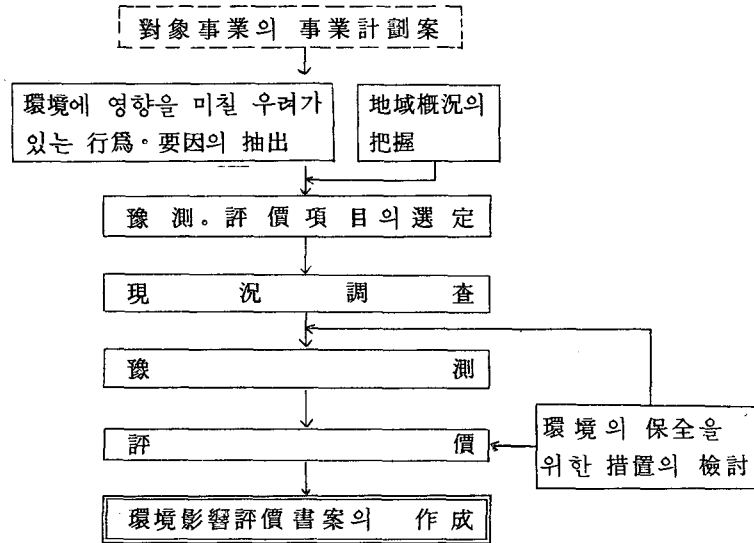
### 5. 環境保全을 위한 措置의 檢討

豫測 및 評價의 結果를 거쳐 環境에 至極히 나쁜 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判斷될 때에는 그 影響을 防止하기 위한 措置를 검토한다. 또한 環境保全을 위한 措置는 對象事業을 實施하려고 하는 地域 및 주변지역의 環境에의 影響을 極力抑制하기 위한 措置로서 對象事業의 計劃案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本來 事業計劃案定의 初期단계에서 檢討하는 것이 必要하다.

6. 環境影響評價書案의 作成

이상의 手法을 그림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環境影響評價의 實施手法



別表 地域概況의 調査事項

項 目	調 查 事 項
人 口	人口의 動態·密度·分布, 流域人口等
產 業	用水, 燃料等
交 通	道路交通狀況, 鐵道·空港·港灣의 利用狀況等
土地 利用	土地利用의 概況, 農地·林地의 分布等
水域 利用	水域의 概況, 水面利用, 水利用等
關係法令의 指定·規制等	關係法令에 의한 指定地域, 地區, 規制內容等
氣 象	風向, 風速, 降水量等
水 象	河川의 流量, 流況, 潮流, 潮位等
大氣 汚染	大氣質의 概況
水質 汚濁	水質의 概況
土壤 汚染	土壤의 概況
騷 音	騷音의 概況
振 動	振動의 概況
低周波空氣振動	低周波空氣振動의 概況

地盤沈下	地盤沈下の 概況
惡 臭	臭氣의 概況
日照阻害	日照阻害의 概況
電波障害	電波障害의 概況
風 害	風害의 概況
地 形 · 地 質	地形·地質의 概況
植 物 · 動 物	植物·動物의 概況
史 跡 · 文 化 財	史跡·文化財의 概況
景 觀	景觀의 概況

別記書式 行爲·要因과 豫測·評價項目와의 關連表  
(對象事業의 種類)

區 分	行爲·要因	豫測·評價項目																
		大氣汚染	水質汚濁	土 壤 汚 染	騒 音	振 動	低周波空氣振動	地 盤 沈 下	惡 臭	日 照 阻 害	電 波 障 害	風 害	植物·動物			地 形 · 地 質	史 跡 · 文 化 財	景 觀
												陸上植物	陸上動物	水生生物				
工 事 施 行 中																		
工 事 完 了 後																		

備考 (1) 行爲·要因欄에 記載한 項目마다의 豫測·評價를 行할 必要 있다고 인정되는 豫測·評價項目에 대하여 欄에 ○印을 할 것.  
(2) 어떤 行爲·要因의 欄에 있어 選定되지 아니한 豫測·評價項目에 대하여 그 理由를 명확히 할 것.

이 技術指針에 입각한 環境影響評價의 實施手 法을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 地域概況의 把握

地域概況의 調査는 豫測, 評價項目(環境에 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는 物質을 包含한다)의 選定, 調査地域의 設定 等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얻기 위하여 自然的, 社會的 地域의 概況, 環境

질의 概況, 및 推移, 被害의 狀況, 公害防止計劃의 內容, 環境保全 開發整備에 關한 諸法令에 입각한 地域의 指定狀況 等에 對하여 調査하는 것이다.

(1) 調査地域

調査地域의 範圍는 對象事業의 種類, 規模 等을 考慮하여 對象事業의 實施가 環境에 影響을

미칠 것으로 豫想되는 地域을 包含한 特別區 또는 市町村의 區域으로 區劃한 地域으로 한다.但, 豫測, 評價의 種類에 依해서 이런 地域을 調査 地域으로 定하기에 不適切하다고 認定될때 또는 參考로 하는 既存資料의 data가 이런 地域의 單位로서 정리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積의 調査 地域의 範圍를 定하여도 無防하다.

## (2) 調査方法

現況調査의 方法은 原則으로 既存資料를 정리, 해석하여 地域概況을 把握하는 方法에 依한다.

既存資料는 「技術指針 第2章 各論의 豫測 評價項目의 現況調査의 項目 및 그 手引」 資料目錄(東京都 都市計劃局 綜合計劃部) 昭和57年 1月 및 母年 發行되고 있는 「圖書 資料目錄 (東京都 環境保全局)」에 明示하는 것이 參考로 된다.

한편 적절한 資料가 없을 때는 現地調査를 實施한다. 現地調査의 方法은 「技術指針」을 參考로 할것.

## (3) 調査項目

調査項目은 第1章 總論의 別表「地域概況의 調査事項」에 明示하는 項目으로 한다. 調査項目 및 調査內容은 表1에서 明表한 가운데서 對象事業에 種類, 規模, 其他 事業計劃案을 감안하여 地域概況을 파악하는데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選定한다.

### 2. 環境에 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는 行爲, 要因의 抽出

對象事業의 種類, 規模, 其他 事業計劃案 이 內容을 檢討하고 對象事業實施로 인하여 環境에 影響을 미친다고 豫想되는 行爲와 그 行爲에 따라 發生하는 要因을 工事의 施行中 또는 工事を 完了後 事業의 活動中에 있어서의 各段階에 對하여 抽出한다. 여기에서 行爲要因의 例를 들면, 한 예로 大氣에 對하여 例를 들면 物件을 태우면 gas가 發生한다. 物件의 연소를 行爲로 하면 發生하는 gas( $NO_x$  等)가 要因이 된다.

### 3. 豫測·評價項目의 選定

2에서 抽出한 行爲 要因과 大氣汚染, 水質汚染 等 公害의 發生 또는 環境의 質에 變化와의

關係 또는 行爲要因이 自然環境, 歷史的環境 또는 景觀에 미치는 影響의 內容 및 程度를 檢討하고 對象事業의 實施에 依하여 대단히 環境이 惡化되리라고 豫想될 때는 이것들의 檢討의 結果를 거쳐 行爲 要因과 豫測·評價項目과의 關聯을 明示한 表를 作成하여(別記 書式을 參考하여 作成) 必要한 豫測·評價項目을 選定한다.

豫測·評價項目으로서는 大氣汚染, 水質汚染 및 土壤汚染을 選定하였을 때에는 이들의 原因이 되는 物質 等を 作成한 表의 「行爲·要因의 란」「記入한 印中」 또는 「同表 밑에」 記述한다.

## 4. 現況調査 豫測·評價의 實施

### (1) 現況調査

現況調査는 對象事業의 實施가 環境에 影響을 미친다고 豫想되는 地域의 環境의 現況을 豫測·評價項目(環境에 影響을 미친다고 豫想되는 物質을 包含한다) 別로 明示하고 豫測 및 評價를 行하기 위한 必要한 資料를 얻기 위한 즉 必要한 資料를 얻기 위하여 實施하는 것이다.

그리고 現況調査를 實施한 後 對象事業에 關한 工事의 着手 또는 工事 完了後 事業活動이 正常 狀態에 到達하는 時點까지에는 相當한 年月이 걸리기 때문에 豫測 및 評價를 할때에 基本으로 되는 Back Ground(對象事業 實施前 環境)의 狀況이 現況調査의 實行時點과의 狀況과 比較하여 대단히 變化가 豫想될 때가 있다. 이런 때에는 現況調査의 結果, 環境變化의 推移, 土地利用에 將來計劃, 環境保全, 開發정비에 關한 諸法令에 依한 規制의 動向, 公害防止計劃의 施策 等を 감안하여 豫測하려고 하는 時點에 있어서 Back ground의 狀況을 推測하여 둘 必要가 있다.

### (2) 豫測

豫測은 對象事業의 關한 工事의 施行中 代表的인 時點 또는 工事 完了後 事業活動이 正常의 狀態에 到達한 時點에 있어서 現況調査를 實施한 地域의 環境狀況이 어느程度 變化하는 가를 豫測·評價項目(環境에 影響을 미치리라 豫想되는 物質을 包含한다) 別로 明確히 하여야

	港灣의 利用狀況 기 타	船舶의 出入隻數, 出入隻數의 推移, 港灣施設의 利用狀況, 乘降人員·取扱貨物量의 推移, 기타 기타
土地利用	土地利用의 概況 農地·林地의 分布等	用途地域의 指定狀況, 土地利用의 區分(宅地·農地·林地·綠地等), 公共施設의 分布, 기타
水域利用	水域의 概況 水面利用 水利用 기 타	水系分布, 流域面積, 河川構造, 海岸·海底地形, 水深, 기타 航路, 레크레이션, 기타 取水의 狀況(農業用水·上水道), 우물의 分布, 漁業權, 기타 기타
關係法令의 指定·規制等	關係法令에 의한 指定地域, 地區規制內容等	地域의 指定狀況, 環境基準·公害防止計劃의 適用地域, 規制內容, 規制方法, 기타
氣象	風向 風速 降水量 기 타	風向(年間平均風向, 기타) 風速(年間平均風速, 기타) 降水量 氣溫, 日射量, 雲量, 逆轉層, 氣象觀測地點 기타
水象	河川의 流量, 流況, 潮流, 潮位等	河川...流量, 流速, 感潮域의 狀況, 기타 海域...潮流, 潮位, 海流, 流入水, 波退의 狀況, 기타 湖沼面積, 水深 또는 水位, 貯水量, 循環期·成層期, 流入·流出水의 狀況 기타
大氣汚染	大氣質의 概況	大氣汚染의 概況, 大氣汚染의 推移, 環境基準
水質汚染	水質의 概況	·目標值의 達成狀況, 苦情運情의 狀況, 기타
土壤汚染	土壤의 概況	土壤汚染의 有無, 地歷, 기타
騒音	騒音의 概況	騒音레벨의 概況, 苦情陳情의 概況, 기타
振動	振動의 概況	振動레벨의 概況, 苦情陳情의 概況, 기타
低周波空氣振動	低周波空氣振動의 概況	苦情陳情의 概況, 기타
地盤沈下	地盤沈下의 概況	地盤沈下의 有無, 地下水位의 概況, 기타
惡臭	臭氣의 概況	臭氣의 感知의 有無, 苦情陳情의 概況, 기타

한다. 여기에서 變化의 程度를 定量的으로 豫測되는 것에 對하여는 可能한 限 定量的으로 豫測하는데 努力하고 事業計劃의 熟度, 豫測方法, 豫測의 事例 等 豫測에 關한 知見의 不備 不足으로 定量的 豫測 困難한 것은 그 理由를 明示하고 經驗的 測面에서 定性的으로 豫測한다.

또한 事業計劃案은 熟度높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程度 不確定的인 內容이 包含된 것으로 思料되기 때문에 豫測은 想定條件을 前提로 하지 않으면 안되며 豫測의 結果는 一般으로 幅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豫測은 環境保全을 생각

하기 때문에 可能한 限 安全Side에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 (3) 評價

評價는 現況調査 및 評價의 結果에 입각하여 地域의 特性 環境保全을 강구하는 措置, 環境基準 等 環境的 配慮를 위하여 諸指標 等を 감안하여 豫測·評價項目(環境에 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는 物質을 包含한다) 別로 對象事業의 實施가 環境에 影響을 미칠 內容程度에 對하여 評價한다.

表 1. 地域概況의 調査事項 및 調査內容

項目, 調査事項은 技術指針 第1章 總論의 別表에 의한다.

項目	調査事項	調査內容
人 口	人口의 動態 人口密度 人口分布 流域人口 기 타	轉入·轉出人口, 出生·死亡者數 人口密度 人口分布 流域人口 人口의 推移, 現在人口, 世帶數, 晝間, 夜間人口, 將來推計人口, 기타
產 業	用 水 燃 料 기 타	用水의 種類(地下水·表流水·海水), 燃料의 種類(液體·gas·固體) 및 量 第1次·第2次·第3次 産業의 構造, 産業別 就業人口, 工業出荷額, 기타
交 通	道路交通狀況  鐵道의 利用狀況  空港의 利用狀況	道路網, 自動車交通量(乘用自動車類·貨物自動車類), 自動車交通量의 推移, 交差點·인터체인지, 버스路線의 位置, 기타 鐵道車兩의 運行狀況, 推移狀況의 推移, 驛의 位置, 기타 航空機의 離着陸回數, 離着陸回數의 推移, 運行路線, 空港의 種類, 乘降人員·取扱貨物量의 推移, 기타
日 照 阻 害	日照阻害의 概況	建物의 概況, 地形의 概況, 기타
電 波 障 害	電波障害의 概況	電波障害의 發生地域의 有無, 電波障害對策濟地域의 有無, 電波到來方向, 기타
風 害	風害의 概況	風害의 發生地域의 概況, 被害의 概況, 기타

地形·地質	地形·地質의 概況	地形·地質의 分布, 規模, 不陘地下水의 概況 기타
植物·動物	植物·動物의 概況	植物·動物의 生育, 生息의 概況, 기타
史跡·文化財	史跡·文化財의 概況	史跡·文化財의 種類, 分布, 기타
景 觀	景觀의 概況	自然的景觀·都市的 景觀의 概況, 기타

5. 環境保全을 위한 措置의 檢討

豫測 및 評價의 結果, 對象事業의 實施가 環境에 심대한 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判斷될 때는 그 影響을 防止할 수 있는 措置를 檢討하고 必要에 따라서 再次 豫測 및 評價를 行

하여 적절한 環境保全을 위한 措置를 檢擇한다.

6. 環境影響評價書案의 作成

環境影響評價書案에 구성은 條例 施行規則 別表 第3 (第5條 關係)의 評價書案 등이 構成基準에 의한다. \*

## 제 3 회 환경보전사진 현상공모

환경보전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모든 국민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진작품을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아 래

응모부분	응모대상	응 모 요 령 (규 격)	응 모 내 용	시 상	
				입선구분	상 금
사 진	제한없음	흑백 및 칼라사진으로 11×14 이상 (필름제출 및 판넬요)	환경오염실태 및 수범사례 *자세한 것은 본협회에 문의바람	금 상 : 1 점 은 상 : 2 점 동 상 : 3 점 입선작 : 40점 참가상 : 100점	500,000 각300,000 각150,000 각 20,000 기념품

○응 모 마 감 : 1985년 5 월 10일

○당선작발표 : 1985년 5 월20일(개별통지)

○유의사항 : •배경 및 내용은 국내에 한함.

- 작품수 제한없음.
- 작품 및 원판 첨부
- 작품뒷면에 제목, 작가이름, 주소, 성별기입
- 입선된 작품은 반환치 않음.
- \*판권 본협회 귀속, 낙선작은 85. 7. 1 - 7. 10 기간에 반출해야 하며 경과시 파손, 분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않음.

○접 수 처 : 환경보전협회 홍보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 가 45번지  
대한상의빌딩 661호 (753-7669)

사단 법인 환경보전협회  
환 경 칭

# 환경보전의 노래가사 현상공모

다함께 즐겨 부를 수 있는 환경보전의 노래를 제정하여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을 새롭게 하고 범국민운동의 확산을 도모키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보전의 노래가사를 현상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 아 래 -

응모부분	응모대상	응 모 내 용	입선작 및 상금
가 사	일반시민 (제한없음)	환경보전을 주제로 쉽고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참신한 내용 (1, 2, 3절)	우수작 1점 500,000 가 작 2점각 300,000

- 응모마감 : 1985년 4월 10일
  - 당선작발표 : 1985년 4월 30일까지 개별통지함.
  - 접수처 : 환경보전협회 홍보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번지  
(상공회의소 661호) 전화번호 : 753-7669
  - 기 타 : 공모 입선된 가사는 작곡 취입하여 전국민이 애창할 수 있도록 홍보함.
- ※ 응모작은 일체 반환치 않음.

1985. 1. .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  
환 경 보 전 협 회  
환 경 청